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자부의 “20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을 반영하여 성주읍사무소의 명칭을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로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명 ⇒ 사무소명칭(안 별표)
- 성주읍 ⇒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 ○○면 ⇒ ○○면사무소 등으로 변경

○ 각 읍·면별 관할구역 명시(안 별표)
- 성주읍 전역, ○○면 전역 등으로 표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6조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0. 5. ~ 2016. 10. 11.)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6조”로,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1. 1. 7>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사무소명칭	소재지	비고 (관할구역)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3	성주읍 전역
선남면사무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	선남면 전역
용암면사무소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1	용암면 전역
수륜면사무소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915	수륜면 전역
가천면사무소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63	가천면 전역
금수면사무소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883	금수면 전역
대가면사무소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	대가면 전역
벽진면사무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2	벽진면 전역
초전면사무소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	초전면 전역
월항면사무소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366	월항면 전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6조 ----------읍・면사무소 ----------.
【별표】	【별표】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읍면명	소 재 지	비 고
성주읍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3	<신설>
선남면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	<신설>
용암면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1	<신설>
수륜면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915	<신설>
가천면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63	<신설>
금수면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883	<신설>
대가면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	<신설>
벽진면	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2	<신설>
초전면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	<신설>
월항면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366	<신설>

사무소명칭	소 재 지	비 고 (관할구역)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3	성주읍 전역
선남면사무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	선남면 전역
용암면사무소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1	용암면 전역
수륜면사무소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915	수륜면 전역
가천면사무소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63	가천면 전역
금수면사무소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883	금수면 전역
대가면사무소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	대가면 전역
벽진면사무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2	벽진면 전역
초전면사무소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	초전면 전역
월항면사무소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366	월항면 전역